



## 2015년 미국의 보험 규제 이슈

김진억 수석담당역

- 미국 보험감독자협회(이하 NAIC)는 2015년도에 부각될 보험 규제관련 이슈를 몇 개 분야로 나누어 발표<sup>1)</sup>하였음.
  - NAIC 회장 Monica Lindeen은 5개 분야로 2015년 보험규제 관련 이슈를 설정하여 보험정책연구소(CIPR)의 정기간행물을 통해 상술함.
    - 이는 사이버 보안 강화, 원칙중심 준비금적립(PBR) 방식 도입, 생명보험회사의 캡티브 재보험 자회사 오용, 미국 모집인협회개혁법(NARAB II) 통과에 따른 규제, 그리고 글로벌 보험규제관련 이슈 등임.
  
- 경영컨설팅회사인 Deloitte도 2015년도 미국의 보험관련 규제 이슈를 8가지로 정리<sup>2)</sup>하였으며, NAIC와 공통된 이슈에 대해서는 Deloitte 의견을 참고함.
  
- 미국 국내 보험산업관련 이슈로 사이버 보안 강화, 원칙중심 준비금적립(PBR) 방식 도입, 생명보험회사의 캡티브 재보험 자회사 오용 등이 부각되고 있음.
  -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국가 기준 및 기술 연구소(NIST)는 사이버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2014년 2월 중요 기간시설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이버 리스크 관리체계를 발표함.
    -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낮은 IT투자와 낮은 보험전산시스템 및 디지털 고객접점 증가를 사이버 공격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최근 이에 대한 문제해결에 몰두함.
    - NAIC는 사이버 보안 특별 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이버 보안 규제를 위한 원칙 초안 작성,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 취합, 사이버보험 시장 정보 취합을 위한 연간보고

1) CIPR(2015, 2), "Emerging Regulatory Issues in 2015".

2) Deloitte(2015), "Forward look Top regulatory trends for 2015 in insurance".

서양식 개정, 소비자 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권리법 초안 작성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생명보험회사의 준비금 적립방식을 현대화하고자 2013년 구성된 NAIC의 원칙중심 준비금 (Principal-based reserving, PBR) 시행 특별 작업반은 기마련된 시행계획에 따라 NAIC 2015년 봄 전국회의를 준비 중임.
  - 감독당국 측면에서 최근 각 주(州)의회마다 PBR 관련법(표준평가법, 표준해약환급금법) 개정 시 소규모 보험회사 면제 규정과 PBR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당면 이슈임.
  - 또한 “소규모 보험회사 면제”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와 적용할 경우 면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가 이슈화됨.
  - 보험업계측면에서는 준비금이 과도하게 계상되는 기존 공식중심의 준비금 체계에서 원칙중심 준비금으로의 전환을 환영하고 있으나,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핵심 주(州)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보이고 있어 방식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보수적인 준비금 적립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이 캡티브 재보험 자회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원칙중심 준비금적립 방식 도입이 대안으로 부각됨.
  -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에 대한 보수적이고 과도한 준비금 적립을 회피하고자 캡티브 재보험 자회사나 특수 목적 자회사(SPV)를 이용하는 경향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2012년 재보험준비금 백서를 작성하였고 2014년 8월에는 백서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캡티브 재보험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제정함.
  - 우선 단기적인 조치로 캡티브 재보험 거래에 대한 계리지침이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칙중심 준비금적립 방식을 통한 적절한 준비금 적립을 대안으로 봄.
  - 보험업계는 향후 캡티브 재보험 자회사 규제 법안들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규제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감독당국에게 캡티브 재보험 자회사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음.

■ 미국 보험감독당국은 해외 재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 해외 재보험회사의 미국 내 담보물 유치에 관한 대상(對象) 협정<sup>3)</sup>과 상호심사체계<sup>4)</sup>를 통한 규제방식에 주목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글로벌 자본기준 제정이 이슈화되고 있음.

- 최근 해외 재보험회사의 미국 내 담보유치관련 문제가 대상(對象) 협정과 상호심사체제로 해결되면

3) 대상 협정(Covered Agreement)이란 특정분쟁이나 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협정을 말함.

4) NAIC는 해외 재보험회사의 미국 내 영업 승인을 위해 여러 주의 감독당국이 서로 심사하는 상호심사체계(Peer Review System)를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26개 재보험회사가 주(州)간 상호심사를 받아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서 해외 재보험회사의 규제방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 미국은 해외 재보험회사에게 미국에서 수재된 보험을 위한 100% 담보물을 미국 내에 유치하도록 해왔으나 NAIC 승인을 얻을 경우 이 담보비율을 낮춰주고 있음.
- 2015년 1월에는 버뮤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그리고 영국이 승인 지역으로 등록되고 이를 각 주(州)의 상호심사방식으로 인정해 줌.

● 한편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2014년 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s)에 적용할 기초자본요건(BCR)을 승인<sup>5)</sup>하였으며, 올해는 대규모 손실준비금(HLA)의 자본 산출 방법론과 위험기준 글로벌 보험자본기준(ICS)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관련 기준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 미국은 IAIS의 회원국으로 글로벌 자본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고 있으나 자국 보험감독 체계와 양립하지 않고 또한 자국 보험회사의 장기투자와 장기상품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자본기준의 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임.
- 또한 미국 보험업계는 그룹 자본 규제로 인해 G-SIIs와 같은 대규모 복합보험회사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부분 보험회사들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경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독강화, 자본확충 요구, 신 재무보고양식 제정, 위험관리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봄.

(CIPR, Deloitte 등)

5) 글로벌 보험권 자본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KiRi Weekly(2015. 5. 26), "금융안정위원회의 보험권 자본규제 강화" 참조.